

법률가가 본 영화, '기쁜바람의 선물'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싫어하진 않죠.”

“법률가로서 영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보죠. 법률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 영화를 이야기하신다면요?”

“...”

우연히 법률가로서 영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걱정이 되었다. 중국 무협영화나 돈 꽤나 쏟아 부은 통쾌한 액션 영화를 보며 세상 일 잊어버리기 일쑤인 내가 법률가로서 영화를 말해야 한다니!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소장을 더 쓰라면 쓰지. 이거야 원...’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재미난 일일 수 있다. 법률가임을 잊게 했던 영화 속에서 법을 발견하는 일은 색다른 맛이 있을지 모른다. 수동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나만의 법률적 의견을 덧붙인다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시선이 되지 않겠나? 게다가 잘못된 법리로 뜯금 없는 질문 공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도 있으니까 말이다.

나를 떠나 법률적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대중예술의 경우 법적 상황이나 처리를 비틀어놓기 마련이어서 법리에 관하여 대중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재미로 보는 영화에도 메시지는 있고 그것이 법과 관련한 강력한 민중의 목소리라면 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행정이나 검찰 등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목소리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셋째, 우리 영화를 위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는 필요하다. 우리 영화가 우리 자신의 얼굴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에 담긴 우리 법문화는 뒤쳐진 것으로 묘사될 우려가 있다. 세계인이 보는 우리 영화라면 법률적 관점과 법문화 면에서 좀 더 꼼꼼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법률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재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요즘의 법률은 그렇게 특정 상황에 묶여있지만은 않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이혼을 중재하는 재판정이 드라마 소재가 된지 오래고, 재판정이 배경인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기

도 하였다. 법률적인 사건들은 일상적이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드라마틱한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행하여지는 대부분의 재판들이 영화에서와는 달리 재미있기는커녕 오히려 따분하기만 해도 말이다.

법률가가 본 첫 번째 영화로 최근 흥행에 성공한 '7번방의 선물'로 정하였다. 어떤 의도, 그것도 영화를 평하기 위해 보는 것은 처음이지만 나름 '법률가의 관점'이라는 아이맥스 안경을 썼다.

눈물과 웃음이 켜켜이 놓인 영화였다. 딸바보인 나를 울리기에도 충분했다. 감옥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 '그린마일'과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가 딸에게 보여주는 코믹한 모습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법률가로서 인권문제, 형형문제, 사형폐지론, 증거조작, 증거재판 등 할 말이 떠올랐지만 어떻게 펼칠지 성글었다. 이 영화에서 법률 이야기를 제대로 한다면 '무슨 영화를 죽자고 보느냐' 할 것이 분명했다. 재미와 감동에 법률은 그릇만 제공한 형국이었다. 7번방의 선물은 법정 다큐멘터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살펴보자. 어떤 쟁점이 있을까? 영화의 몇몇 장면들과 함께 이야기하려 한다.

여덟 살 예승이와 그 정도 지능의 아빠 용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 초등학교 입학 을 앞두고 눈여겨 봤던 세일러문 가방을 사기 위해 아빠의 월급날을 기다린다. 딸에게 사줄 마지막 남은 가방 때문에 용구는 가게에서 매를 맞는다. 매를 맞은 용구는 억울할 법도 한데 영화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



구가 주장할 헌법상의 기본권과 형법상의 폭행죄를 묻는 일도 없다. 용구가 주장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용구가 장애인인 아니었다면 그렇게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했을까? 법이 말하는 평등과 현실의 불평등은 그만큼 괴리가 크다. 영화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 병폐인 폭력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후에도 폭력은 용구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때에, 그리고 항소심 공판 기일에도 반복된다. 그러한 폭력에 대하여 영화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다른 감성적 장치들을 부각시키며 폭력을 이겨내게 한다. 재미를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영화에서나 이 영화에서나 폭력에 둔감해지는 것은 적잖이 우려된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경찰청장의 딸은 용구를 데리고 가방을 파는 곳으로 데려가고 아이는 시장 골목에서 미끄러져 사망한다. 응급조치를 취하려던 용구를 지나던 행인은 강간살인범으로 오인한다. 현직 경찰청장의 딸 살해범으로 용구는 체포되고 현장검증 등 수사가 이어진다.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으로 실제적 진실은 덮인다. 어눌한 용구의 말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훗날 예승이가 사범연수원생이 되어 진행하던 모의재판에서 울부짖듯 항변한 것도 이 부분의 권리들이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는 용구에게는 더욱 필요했지만 오히려 더 무시되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경찰청

장의 딸이 피해자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들이 과연 공정하



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재판과 달리 경찰에 대하여는 제척이나 기피, 회피제도가 없다. 만약 경찰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라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준비해둔 우리의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영화적 허구가 법과 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용구는 성남교도소에 갇힌다. 7번방 사람들을 만나고, 7번방 방장을 구한 대가로 딸 예승을 7번방으로 데려온다. 이제 영화의 주무대인 교도소가 등장한다. 하지만 사형수는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기결수와 사형수가 함께 수용되는 않는다. 이러한 법 현실을 무시한 영화는 아이를 몰래 반입(?)하는 점점 더 기발한 환타지로 변한다. 영화는 오래전 미국 영화 <그린마일>의 환타지와 어느 면에서 닮아있다. 그린마일에 ‘그런 법이 어딴?’라고 묻지 않듯 7번방의 선물에 지나친 법률적 잣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행형의 관점에서 이런 감방은 없다. 교도소 방도 그렇게 예쁘지 않

다. 물건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드나들 수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학교 기숙사도 저렇지는 않겠다.

교도소 보안과장의 묵인 하에 예승이가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 아이가 교도소에 가는 것, 그 설정을 위해서 영화는 법률이나 행형의 실체는 쉽게 포기하고 있다. 아니 포기해도 좋

다. 적어도 그런 교도소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그래서 더욱 이런 상상이 필요했다고 해 두자. 그럼 아이가 교도소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여성 수형자에게 아기가 있는 경우 18개월까지 교도소에 함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처럼 8세 여자 아이가 아

빠와 함께 있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제에서나 불가능한 일이다. 역시 환타지! 패스~

용구가 무죄라는 것을 짐작한 7번방 사람들과 교도소 보안과장은 용구의 무죄를 위해 애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국선변호인은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탄원서 넣는 것이 그다지 소용이 없더라고요.”

지친 듯한 변호사가 맥없이 말하고 교도소를 떠나는 장면이다. 탄원서를 넣는 것이 그렇게 소용이 없을까? 영화를 본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다. 사형수의 국선변

호인이 저릴 수 있을까? 국민들이 느끼는 국선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사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도 그 못지 않을지 모른다. 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변호인은 모르는 말로 형식적인 행동만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술 변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을 문서로 말한다. 꼼꼼히 듣지만 의뢰인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확정이나 법률적인 쟁점 관련한 것뿐이다. 물론 국선변호를 맡은 이상 사선과 다를 바 없이 성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고 책임이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국선변호에 있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구의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일에 용구를 만나러 온 경찰청장, 그리고 그의 폭력 앞에 용구는 예승이를 지키려면 허위로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경찰청장이 재판 중에 있는 용구를 재판 직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을까? 답은 불가하다. 일단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변호인도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는 만남은 없다. 영화의 허구는 이제 사형선고, 즉 용구의 죽음으로 정해진 수순을 밟는다. 지적 장애가 있는 용구가 진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사형선고 받기는 어려운데 말이다. 용구를 탈출시키기 위한 교도소 마당의 열기구도 환타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쯤이면 그저 웃어도 좋다.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인 줄 알 테니까.

〈그린마일〉과의 공통점은 등장인물이 여아 살



해법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다는 점에도 있다. 당시 사회의 보편적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부조리 불공정한 일들과 맞물려져 있다. 사회의 그늘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밝히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건네진 잔인한 법의 칼날은 몸서리치게 무섭다. 그 칼날이 무수한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는 제거대상이 된다. 법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딸의 생일날 용구는 딸의 절을 받는다.

“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쁘게 절을 하는 어린 딸의 모습에 7번방 사관들이나 관객 모두 코끝이 찡해졌다. 그리고 용구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이 행해지는 줄 알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화에서 용구에 대한 사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법 제도가 남아 있고 요즘 들어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 예방적 효과와 응징의 수단으로 사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에서처럼 오판의 우려가 있고 사형된다면 돌이킬 수 없다. 사형제도 자체의 범죄예방적 효과가 부족할 뿐더러 범죄자 역시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형폐지에 내 마음이 기우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그렇게 요구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용구는 무죄가 된 거죠?”

영화를 보고나오는데 아들 녀석이 물었다.

“사법연수원 모의재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단다.”

“그럼 재심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들이 알아듣든 말든 재심 이야기를 하였다. 영화가 어디까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겠다 싶었다. 이 영화에서 용구에 대하여 재심이 가능하려면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무죄임이 인정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에 소정의 청구절차에 의해 가능하다. 영화에서 재심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영화는 법률교육 매체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과 형사소송의 실체에 대한 편견만큼은 사법 실체에서 지켜야 할 여러 원칙을 위한 교과서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또 영화의 환타지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영화는 영화일 뿐, 법정 다큐멘터리가 아님을 상기하는 것이 영화를 즐기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진실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을 포착한 데에 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버를 용서하겠습니다!”

세일리문의 말을 빌려 예승이는 허위자백을 택하고 결국 자신을 떠나간 아버를 용서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버의 선택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